

남북귀환어부와 그 가족의 복합적·장기적 피해와 회복 문제*

김아람**

목차

1. 머리말
2. 남북 배경과 귀환 이전 피해
 - 1) 모호한 남북 해상 경계와 어업 현실
 - 2) 가족의 불안정한 생활
3. 국가 폭력에 의한 피해
 - 1) 법 적용의 한계와 반(反)인권적 사법 절차
 - 2) 감시와 연좌제
 - 3) 사회적 낙인과 반복된 간첩 조작
4. 가족의 고통과 회복 과정
 - 1) 고통의 전이와 가정불화
 - 2) 명예 회복과 해원(解冤)
5. 맺음말

1960~1970년대에 북한에 납치·억류되었다가 남한으로 돌아온 어부들이 있었다. 남한 정부는 이들에게 간첩죄를 적용해서 불법적으로 연행, 고문했고 그 이후 수십 년 간 감시, 사찰했다. 어부의 가족에게도 '연좌제'를 적용해서 취업, 여행에 제한을 두었

다. 이러한 납북귀환어부 피해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에서 남북한이 바다의 경계를 합의하지 못한 채 분단되어 대립한 데 기인해 벌어진 일이었지만 남한 정부는 납치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어부가 납치된 후 가족들은 생사를 모른 채 어렵게 생계를 이어갔고 자녀들은 학업을 이어가기가 어려웠다. 납북 어부는 남한에 돌아온 즉시 강제 연행되어 심문을 받았고, 구타와 고문도 당했다. 검찰은 유도 심문과 각종 고문을 통해 간첩 혐의를 씌웠다. 국가 폭력은 어부와 가족에 대한 감시와 사찰로도 이루어졌고 먼 친척에게까지 피해가 미치자 어부들은 죄책감을 느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납북귀환어부는 '빨갱이'로 낙인찍혔고, 피해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 고문과 감시로 인한 납북귀환어부의 피해는 가족들에게도 전가되었다. 건강이 악화되거나 음주가 잦아져서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기기도 했고 가정 폭력이 발생하기도 했다. 2023년 현재, 다방면에서 벌어진 납북귀환어부와 가족의 피해를 드러내고 국가의 책임을 묻는 진상 규명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가족은 피해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어 납북귀환의 피해자인 남편/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향후 법적·제도적으로도 납북귀환어부와 가족의 회복을 도울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논문 분야: 한국 현대사

주제어: 납북귀환어부, 정전협정, 박정희 정권, 국가 폭력, 간첩 조작, 연좌제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A2A03050638). 또한 이 논문은 2023년도 한림대학교 교비연구비(HRF-202307-002)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림대학교 글로벌융합인문학·사학 전공 조교수, aram8250@gmail.com

1. 머리말

남북귀환어부는 누구이고, 왜 피해자가 되었을까? 남북귀환어부는 동해상과 서해상의 남북한 접경 지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북한 선박(경비정)에 피랍되어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남한으로 돌아온 어부들을 말한다. 1954년부터 1987년까지 남북 귀환한 선박은 426척, 어부는 3200여 명이다. 동해안에서 1360여 명, 서해안에서 1860여 명이 있었다(〈표 3-1〉, 〈표 3-2〉). 이들이 북한에 억류된 기간은 짧게는 10여 일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되기도 했는데, 이들의 피해는 남한에 돌아온 후 한국 정부로부터 시작되었다.

1960~1970년대의 피해자 사례를 통해 보면, 정부는 어부들에게 반공법 위반(간첩죄)을 적용했고, 그 과정에서 불법 연행 및 구금, 고문 등이 이루어졌다. 남북한 분단 후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여러 간첩 조작 사건이 벌어졌고 많은 피해자가 나왔던 것처럼 남북 어부도 간첩 조작의 대상이 되었다. 어부들은 어업을 하다가 납치된 피해자였지만 북한에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간첩 혐의를 받았던 것이다. 남한에서 그간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는 재일 교포, 해외 유학생, 의문사 피해자, 월북자 가족 등으로 다양했다.¹ 남북귀환어부 사건은 다른 간첩 조작 사건과 비교할 때 피해자 수가 매우 많고, 정치·사회적 활동과 무관하게 간첩 조작이 벌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어부들은 북한과 바다를 접하는 환경에서 생업을 하다가 간첩으로 몰리게 되었다.

1 1950년대부터의 조작 간첩에 대해서는 김정인·황병주·조수룡·정무용·홍정완·홍종욱·유상수·이정은, 2020, 『간첩시대 — 한국 현대사와 조작간첩』, 책과함께를 참조할 수 있고, 남북귀환어부 사례는 같은 책의 이정은, 「누구를 간첩으로 만들었나 4: 남북귀환어부」의 글에서 다루고 있다.

표 3-1 연대별 납북귀환어부 현황²

(단위: 척/명)

연대	납북 선박/어부	미귀환 선박/어부
1954~1960	99/675	2/35
1961~1970	314/2,236	16/241
1971~1980	40/639	8/115
1981~1987	6/101	1/12
합계	459/3,651	27/403

주: 납북 선박 및 선원 중 5척이 침몰하고 16명이 사망.

표 3-2 지역별 납북귀환어부 현황³

구분 연도	납북			귀환			미귀환(누계)		
	계	동해	서해	계	동해	서해	계	동해	서해
계 (척/명)	459 3,648	165 1,527	294 2,121	426 3,230	155 1,364	271 1,866	33 418	10 163	23 255

1960~1970년대 씌워진 간첩 혐의로 인한 피해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은 최근에 들어서 재심을 청구해 무죄 선고를 받고 있다.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2022년 피해자 982명에 대해 직권 조사 결정을 내렸고, 진실 규명과 함께 국가에 직권 재심을 권고했다. 대검찰청에서는 2023년에 이르러 관할 검찰에 직권 재심을 청구하도록 지시했다. 재심이 이루어지고, 무죄 판결로 이어지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법적 판단을 바로 잡는 조치이자

- 2 국무조정실 남북전력기획단, 「연도별 해상납북 및 송환통계」, 『피랍관계철 27통진호』(동진호의 오기, 국가기록원 CA0286791). 이 자료는 1기 진화위에서 납북귀환어부 사건 조사관이었던 변상철이 2009년 8월 6일 국가기록원에서 입수했다. 변상철, 2021, 「납북귀환어부의 국가폭력 피해와 현황, 전망」,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진실규명 포럼 자료집』(2021.11.26).
- 3 치안본부, 1987, 「납북귀환 선박 및 어부현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10, 「납북귀환어부 이상철 간첩조작 의혹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18쪽에서 재인용.

납북귀환어부 당사자와 그 가족의 장기적인 피해를 인정, 배상해야 하는 시발점이 된다. 하지만 재심 무죄 판결 이전까지 납북귀환어부는 범법자로 살아야 했고, 그 가족에게도 2000년대까지 연좌제가 적용되고 있었다.

이 글에서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납북귀환어부와 가족이 겪었던 피해를 분석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을 함께 규명하고자 한다. 이들의 피해는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해의 배경에 대해서는 왜 북한으로의 납치가 발생했는지, 남한 정부가 왜 이들을 보호하지 않고 폭력을 가했는지 등의 문제가 정치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피해 양상을 살펴보면, 국가에 의한 폭력이 여러 방식으로 매우 오랫동안 자행되었고 어부뿐만 아니라 가족도 대상이 되었다. 피해 결과로 보면, 납북귀환어부 가족의 삶은 당시의 일상부터 현재까지의 일생에 영향을 받았다.

정리하면, 납북귀환어부 사건의 피해와 회복을 다루는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분단과 한국전쟁 후 해상 분계선의 문제와 남북 체제 경쟁이 어떠한 문제를 초래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해상에서 어업을 하던 어부가 납치되었다가 다시 돌려보내진 배경과 관련된다. 둘째, 간첩죄를 조작하고, 사회적 공포를 조장한 한국 정부의 반인권적·불법적 행태를 살펴봄으로써 국가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시대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기준을 세울 수 있다. 셋째, 과거에 벌어진 여러 피해 사건들을 오늘날 어떻게 바로잡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무엇일지 국가의 책임과 사회적 성찰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아울러 납북귀환어부 주제에서 가족 경험을 함께 주목하는 이유와 그 의의를 생각해보는 필요가 있다. 우선 피해의 범위와 내용을 새롭게 정의

할 수 있다. 이는 직접적인 당사자로 피해를 국한할 수 있는 사건의 성격을 재고하게 한다. 가족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피해는 고문의 정도나 구금 일자 등 제도적 폭력을 근거로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기서 법적·제도적 배상이 구금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당사자의 피해에만 제한되는 것의 한계를 발견하게 된다.

또 여성과 자녀의 경험을 복원해 역사 서술에서 새로운 주체에 주목하고, 그 의미를 상기할 수 있다. 어촌 가정에서 어부의 여성 배우자는 장기간의 어업으로 남편이 부재할 때 생계를 책임졌을 뿐만 아니라 고기 말리기, 그물 손질 등의 노동을 하며 가계를 유지했다. 납북 귀환의 피해 후 여성과 자녀 들은 어부의 국가 폭력 피해로부터 연쇄된 가정 폭력 속에 놓이기도 했다. 피해자가 된 남편과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여성이 감당해야 하는 몫은 적지 않았지만, 여성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주어진 조건을 수용하고자 애를 썼다. 이러한 가족의 경험은 사적인 한탄에 그치지 않으며 마땅히 역사로 서술될 가치가 있다.

또한 생존 어부 피해자가 줄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가족의 기억과 말하기는, 유일한 기록이 되기도 하고 미래를 위한 운동의 원천이 된다. 현재 진상 규명에 나서는 아내와 자녀는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남편과 아버지의 과거를 돌아보고 있으며 이어서 스스로의 삶도 재의미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 글은 문헌 기록과 함께 구술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납북귀환어부의 피해 사실은 구술을 통해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당시에 남겨진 문헌 기록은 심각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검찰의 공소 사실 등 재판 관련 기록은 사법 기구가 무리하게 적용하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공소 내용은 고문 등의 불법적인 수사 과정의 결과이기도 하다. 언론 보도 역시 사건에 대해 단편적인 사실 관계만 파악할 수 있고,

그 전후 사정이나 피해 사실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헌 자료의 한계는 곧 납북귀환어부 사건이 그간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며, 피해 당사자의 구술은 은폐되어 있던 사실을 드러내는데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2021년 여름부터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는 납북귀환어부 사건의 피해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활동이 각 기관이 협력을 통해 진행했다. 시민 단체인 강원민주재단(이하 민주재단)은 피해자와 함께 사건을 공론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고, 이를 근거로 2023년 11월 10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수여하는 한국민주주의상(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역 언론사에서도 관심을 가지며 학술 포럼과 연재 기획을 진행했다.⁴ 민주재단은 2022년 6월 20일에는 강원도의 지원을 받아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민관합동추진단’을 이끌었다. 추진단에서는 피해자들이 진화위에 사건 신청을 하도록 도우면서 동시에 진행했다. 이 과정은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피해자들은 그간의 강요된 침묵을 깨고 서로 피해자임을 드러내어 모임을 결성했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추진단의 구술을 거절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총 25명이 참여했다. 면담은 필자와 임혁(한림대학교 사학과 석사과정)이 담당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납북귀환어부 사건의 배경과 관련해 정전협정과 당시 어업 상황을 살펴보고 납북이 가족에게 미친 영향을 다룰 것이다. 진화위 보고서에서는 1950년대 이래로 지속한

4 「강원민주재단, 한국민주주의상 수상」, 『강원도민일보』 2023.11.8.; 강원민주재단, 2021, 「제3차 민주주의 포럼 — 국가폭력의 상처와 치유,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인권유린, 간첩 조작 사건」(2021.6.25.); 강원민주재단·강원일보사, 2021, 「감춰진 진실 —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진실규명 포럼」(2021.11.26.).

표 3-3 인용 구술자 정보

구술자	관계	생년	피해 선박	납북 일시	귀환 일시
A	딸	1963	대양호	1968.11.8.	1969.5.28.
B	아들	1968	제3명성호	1971.10.21.	1972.9.7.
C	딸	1966	조사중	1968.10.30.	1969.5.28.
D	딸	1961	무진호	1972.8.30.	1972.9.15.
E	딸	1955	신광호	1968.1.6.	1968.3.23.
F	아내	1951	삼창호	1972.8.23.	1972.9.15.
G	아내	1957	풍성호	1968.11.8.	1969.5.28.
H	아들	1972	용진호	1967.3.19.	1967.6.3.
I	아내	1937	용진호	1967.3.19.	1967.6.3.
J	딸	1957	신광호	1968.1.6.	1968.4.10.
K	손녀	1984	영덕호	1968.11.8.	1969.5.28..
L	본인	1953	협동호	1971.5.13.	1972.5.10.
M	본인	1949	협동호	1971.6.3.	1972.6.24.
N	본인	1956	제2승해호	1971.8.30.	1972.9.7.

정전협정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았고, 어부들의 어로 저지선(어업 통제선) 월선의 고의성 여부를 중요하게 다루면서 근본적인 사건 발생 원인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3장에서는 구체적인 국가 폭력의 피해 내용을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관련 문헌 기록이 대상화한 피해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마주하게 된다. 납북귀환어부들은 부당한 법의 테두리에서 범법자가 되었고, 법적 처벌 후에도 수십 년에 걸쳐 감시와 연좌제의 대상이 된 데다가 다시 간첩으로 몰리기도 했다. 4장에서는 어부 피해자의 고통이 가족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다루려고 한다. 최근에 여성과 어린 자녀의 기억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깊이 눌러 있던 고통이 당사자들에 해석되고 있다. 가족들은 사건의 실체를 새롭게 알게 되며 남편/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가족의 오래된 상처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남북 배경과 귀환 이전 피해

1) 모호한 남북 해상 경계와 어업 현실

남한의 어부들이 왜 북한 선박으로 납치가 되었을까? 바다에서 남북의 경계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었던 것일까? 한국전쟁 정전협정(1953.7.27.)에서는 육지의 군사 분계선 설정과 달리 해상 분계선 설정이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 유엔(UN)군도 해상 분계선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다. 유엔군은 정전 당시에 한반도 주변 해역의 제해권을 전적으로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해상 분계선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⁵

전쟁이 끝난 후 한국 정부는 어로 저지선을 설정했고 이후 잦은 변경이 있었다. 어로 저지선은 분단 상황에서 어업의 북방 한계선을 정한 것인데, 1950년대에 이 저지선이 북쪽으로 상향되며 북한의 나포가 본격화되었다. 1957년 11월 16일 자로 정부가 동해안 어로 저지선을 28°26'에서 38°35'45"로 변경했다. 11월 9일에 어선 8척이 납치되었는데, 해군은 명태잡이 구역을 확대해 동해안 이익을 보호하고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어로 저지선을 북상향했다. 이에 북한에서는 남한보다 우수한 해군력으로 최신식 쾌속정을 활용해 남한 어선을 나포했다. 해군 해상 경비 합정이나 경찰 경비선은 마땅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⁶ 1980년대까지 총 460여 척이 나포된 중 1950년대에 21.6%인 100여 척이 나포된

5 한국전쟁에서의 남북 군사 분계선, 해상 분계선 설정에 관해서는 김보영, 2016, 『전쟁과 휴전 — 휴전회담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한양대학교출판부 참조.

6 「어로저지선을 전폐」, 『조선일보』 1957.11.16.; 「동해어로 확장해역」, 『동아일보』 1957.11.17.; 변상철, 2019, 「남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실태 보고」, 『남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구제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토론회』, 7~8쪽.

배경이다.

이 어로 저지선은 여러 번 작은 변경이 있었지만, 1968년은 중요한 변동이 있던 때이다. 1967년 1월에 어로 저지선을 경비하던 남한 해군 함정이 북한의 포격으로 침몰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어로 저지선을 넘어가서 조업하던 어선들을 남측으로 돌려오도록 따라가다가 북한 해안 동굴 진지의 해안포로부터 포격을 당했다. 사건으로 군사정전위원회가 열렸으나 북한에서는 해군이 휴전선을 넘었고 먼저 사격했다고 주장했다.⁷ 이듬해인 1968년은 심각한 안보 위기 시점이었다. 1월 21일에 김신조 등 간첩단이 침투했고, 1월 23일에는 미국 해군 첩보함 푸에블로(Pueblo)호가 납북되었다. 11월 2일에는 울진·삼척 지구 무장 공비 사건이 발생했다. 위기가 가시화되자 한국 정부는 11월에 '어로 한계선 변경 조치'를 실시했다. 동해안이 먼저 5마일을 남하시키고, 1969년에 서해안도 조정했다.⁸

문제는 어로 한계선 위반에 대한 처벌 조치였다. 어로 한계선 위반에는 수산업법이 적용되고 있었지만 1968년 11월 24일 대검찰청 공안부는 조업 중 두 번 이상 납북되었다가 송환된 어부에 대해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사형을 구형하라는 초강경 방침을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탈출죄·잠입죄와 형법의 간첩죄·간첩미수죄를 적용, 기소하며 유기형을 구형할 때는 자격 정지형을 함께 구형하고, 집행 유예 판결이 나오면 무조건 상소하라고 했다.⁹

7 「해군경비함 복귀에 피격침몰」, 『동아일보』 1967.1.19.; 「사건경위 해군발표」, 『동아일보』 1967.1.20.; 「“휴전선 넘어왔기에” 운운」, 『경향신문』 1967.1.21.

8 「사설 — 어로한계선 변경과 해안경비 강화」, 『경향신문』 1968.11.26.

9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17,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19쪽; 「두 번 이상 납북어부 사형 구형토록」, 『동아일보』 1968.11.24. 이정은, 2020, 앞의 논문, 316쪽에서 재인용.

정부의 이러한 차별 방침은 납북귀환어부 피해 사건의 출발점이었다. 어부와 어업의 현실과 차별 조치는 큰 괴리가 있었다. 우선, 현실적으로 당시의 해양 기술과 조업 기술의 한계로 해상에서 어로 한계선을 알기는 어렵다. 어부들이 어업 한계선을 명확히 인지했다고 볼 수도 없다. 정부는 어량을 따라 이동한 어부들의 '월선'에 미필적 고의를 적용했지만, 월선과 월복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 또 어부들이 해군 경비 등으로 대략의 어로 한계선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어업 활동에서 한계선은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1967년 1월 포격 사건 당시에도 어로 저지선 위쪽으로 넘어가 있는 어선은 200여 척에 달했다.¹⁰ 게다가 1968년 한계선이 조정되고 내려진 초강경 차별 방침이 어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졌는지 불분명하다.

또한 어로 저지선 월선이 아니었다고 해도 납북되었다가 돌아오면 조사와 처벌을 받았다. 1968년 11월에 강원 고성경찰서에서 어선 7척의 납북 상황을 보고할 때도 4척의 납북 위치는 북위 38°33'으로 당시 어로 저지선의 남쪽이었다. 1968년 11월 28일 기준 어로 저지선은 38°34'45", 북방 한계선은 38°36'45"였다.¹¹

그리고 어부들이 납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데에는 정부의 경계 경비 책임이 있다. 해군과 경찰이 해상 경계선 경비를 철저히 하지 못할 수도 있었고, 북한과의 군사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인 대응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들의 구술 중에서는 북방 경계선 안에서 납치가 될 때도 남한의 군경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나포 상

10 「동해상 전함에 '전투비상」, 『조선일보』 1967.1.21.

11 진실화해추진위원회, 2022, 「건설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2022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2권』, 213~214쪽.

황을 지켜보았다는 내용도 있었다.

한편, 1960년대에 남북이 크게 증가하는 또 다른 배경으로 1965년 한일 어업 협정 또한 들 수 있다.¹² 한일 어업 협정의 체결로 동해와 남해에서 한국 어부들은 일본 어선과 경쟁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낙후한 어선과 장비로는 일본과의 경쟁에서 버틸 수 없었다. 어업 조건이 악화되면서 어부들이 북쪽을 향해 어업 공간을 확장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어부들의 입장에서 동남쪽에는 일본과 수역에 경계가 강화되었고, 북쪽으로는 북한과의 모호한 어로 한계선이 있었다. 즉, 어업 수역은 한일 외교 관계와도 관련되어 있었고, 어부들이 개인적으로 경제성만을 추구해 남북한의 경계를 소홀히 여겼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부들에게 고의적 월북과 간첩죄를 적용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일방적인 대검찰청의 지시가 내려졌다. 어부들이 '납치'되는 피해가 '탈출', '잠입'으로 전환되었고, 어로 한계선 남하 지시로 인한 어부들의 피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축소되었다.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만 해석하더라도 어부들의 '탈출'과 '잠입'에 고의성이나 목적성을 찾기는 어렵다. 설령 어로 한계선을 넘어가는 월선을 했다 하더라도 어부들의 납북이 피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북한에서는 1968년 전후로 간첩 침투 시도를 늘리고 있었고, 1960년대 전반보다 억류 기간도 늘렸다. 어부들은 어로 한계선 조정 후에도 기존의 영역에서 해오던 방식대로 조업을 하고 있다가 북한에 납치가 되었지만, 정부는 모든 책임을 어부들에

12 「수산관계자 좌담회 어업 어장 한-일 수교 후 — 어떻게 변했나, 『경향신문』 1966.1.10.: 「남조선강원도에만도 5만 7천여 명의 어민들이 절망, “어장에서는 일본배들이 독판”치고 있다, 『평양신문』 1967.10.8. 이 내용과 자료는 이 글의 초고를 발표했던 한림과학원 심포지엄(2023.6.30. ‘경계에 선 여성들’)에서의 토론자 이준희 선생님이 제시해 주셔서 반영할 수 있었다. 감사 인사를 전한다.

게 지우고, 처벌만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2) 어부 가족의 불안정한 생활

가장 역할을 하던 어부가 납치되었다가 돌아오기까지의 기간은 짧게는 15일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렸다. 납북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가족들은 남편이나 아버지가 갑자기 납북이 되었을 때, 어디로 갔는지나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불시의 부재는 남은 가족이 일상을 영위하기 어렵게 했다. <표 3-3>에 제시한 구술자 I는 남편이 1967년 3월,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납북되었으므로 북한에 납치되었으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 납치된 어부의 가족들은 배의 선장이나 선주를 찾아가서 정보를 얻으려고 했으나, 그 가족들 역시 배의 행방을 알 수는 없었다. 이때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안 속에서 어머니나 아내는 집을 보러 가는 경우가 많았다. I가 여러 점집에 가보았을 때 대부분 남편이 사망했다고 했다. 그는 아들과 함께 구술을 하다가 아들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던 당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점쟁이가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막 울고불고” 덩달아 그도 함께 울었던 일이 있었다. 어떤 점쟁이는 배가 일본에 갔다가 “파산이 돼서 딱 깨져 가지고 물속에서 다 고기밥이 되고 말았다”고도 했다. I의 시어머니도 “100군데 집을 봤”는데 다 죽었다고 했다. 단 “한 군데서 무당이 방울을 흔들면서 방울을 자꾸 뒤로 던”졌더라는 것이다. 북에 갔다는 얘기가 있었다. 하지만 가족들은 아들(남편)이 “북한에 갔다는 걸 믿지를 았았”고 “죽었다고 생각”했다.

E는 중학교 1학년 때인 1968년 1월에 아버지가 납북되었다. 셋째 동생이 있던 때였는데, I와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납북되었던 것은 몰랐

다. 그의 어머니도 짐을 보러 다녔다. 5남매를 돌보던 어머니는 아버지의 납북 후 충격으로 “너무 많이 아프셨”다. “엄청 고생을 많이 하며” 살다가 “무릎도 못 쓰고 수년을 기어 다니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한다.

남편이 부재한 상황에서 어린 자녀를 돌보기가 쉽지 않았다. I는 아기들을 친정에 맡겨두어서 딸 한 명은 “젖도 제대로 못 얻어”먹었다. 딸이 태어난 지 20일이 안 되어 남편이 납북되어 당시에는 “죽으면 죽고, 말면 말고”, “아버지가 없어졌는데 뭐 너, 너쯤이야” 하는 생각이 있었다. 이때 딸의 출생은 환영받기는커녕 원망의 대상이 되었다. 딸이 태어났을 때 “네가 재수가 없다. 네가 재수가 있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됐겠냐”는 말을 주변에서 들었고, I도 그 생각에서 자유롭지는 않았다. 그 뒤 아버지가 돌아오고 나서는 딸에게 “네가 재수가 있다”고 반전이 일어났다. 제대로 양육받지 못했던 아기는 아버지의 행방에 따라 ‘재수가 있거나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납북되었다가 돌아와서 구금 등 피해를 입은 어부의 모습은 납북 이전과는 전혀 달라졌다. F의 남편은 1972년에 3주가량 억류되었다가 돌아왔고, 남한에서 끌려가서 “한 달 만인가 나왔”을 때는 “이빨도 빠지고, 얼굴도 초췌해”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 “애기를 하려고 그러면 말하지 말라고” 했고 “경찰이 늘 따라댕겼”다. 그러다 보니 남편은 “무서워 가지고 바깥을 못 나가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F는 납북 전과 비교하면 “신랑이 완전히 바보 멍충이가 됐”다고 했다. 경제 활동도 당연히 할 수 없었고, 가계 생활은 그녀의 몫이었다. E의 아버지도 “당하고 온” 뒤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어머니가 노가리 건조 등의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갔다. E도 어머니를 도와 겨울에 “손이 쫘쫘 얼었”지만 덕장에 노가리를 널었다.

아버지의 납북 귀환 후 자녀들 역시 생계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고, 교

육받기가 어려웠다. A는 여섯 살 때인 1968년 11월에 아버지가 납북되었다가 7개월여 만에 돌아왔다. 기관장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징역 1년 6월, 자격 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고문과 구타를 많이 받아서 다리를 절었고, 낙인으로 인해 다시 배를 탈 수 없었다. A는 중학교 2학년까지 공부한 자신이 언니들에 비해 고생을 안 했다고 하면서 한 언니는 “국민학교 나와서 식모살이하고, 학교 선생님 애들 낳으면 그 애기 봐주고 밥 얻어먹고” 살았다고 한다.

어부가 북한에 나포, 억류되었다가 귀환해 구금 생활을 하는 동안 가족들은 막연히 가장을 기다리며 무속 신앙에 의지하기도 했고, 돌아온 남편/아버지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아내와 자녀들은 생활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귀환 직후 가족과 만나지 못했던 어부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3. 국가 폭력의 부당성

1) 법 적용의 한계와 반(反)인권적 사법 절차

납북되었던 어부는 항구에 돌아오자마자 즉시 연행되었다. 경찰은 피의자 신분을 적용해 절차를 진행했다. 동해안에서는 1969년에 강원도경찰청이 합동 심문반을 구성해 귀환 어부를 분산 수용했고, 가족 등의 면회를 일체 금지했다. 합동 심문반은 지방 경찰서에서 차출한 합동심문요원, 치안국 심문반, 군 및 중앙정보부 수사관으로 구성했고, 단계별 심문 계획에 따라 ‘간첩 색출 및 공작 여건 개척’을 목표로 심문했다. 강원도 경찰국은 간첩을 색출하는 심문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기를 진작

시키라고 지시했다.¹³

심문은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M을 비롯해서 속초의 여러 당사자들은 경찰서 앞 여관을 기억하고 있었다.

집을 못 왔죠. 뭐 속초경찰서 앞에 그 무슨 여관이더라고. 지금 뭐 지금 하도 하도 오래 돼가지고 그 여관이 기억이 잘 안 나네. 그 여관에서 이제 우리 열한 명이, 열일곱 명이 같이 여관 숙소를 같이 있었어요. — M

그거 뭐 속초 딱 오더니 버스 딱 타고 뭐 해동여인숙이 거기에 한 칸 딱 갖다 놓더니 그때부터 이제 조사 시작이야. 지금도 가면 그 여인숙에 가면 칸이 많잖아, 그 여인숙이. 이제 칸칸이 이제 다 들어가는 거지.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나가서 이제 조사받으면 맨 얻어터져 뭐 소리 지르는 사람뿐이야. 뭐 이 해동여인숙이래. 조촐하게 이렇게 방 (소리) 다 들리지 뭐. 근데 뭐 조사는 한 놈이 받아. 뭘 해경 있지 방첩대 있지 뭘 보안대 있지, 뭐 이 그래 한사람이 몇 번씩 끌려 댕겨야 되잖아, 그거. — L

여관에서의 심문 내용은 반공법, 국가보안법을 적용을 위한 포석이었다. L은 질문(조사)의 목적이 단순했다고 말한다.

질문 주목적이 그거야. 거기 가서 뭘 배웠으며 여 와서 지령을 받아 왔냐. 그 얘기가 그냥. 애들이. 조사가 그뿐이 더 있나. — L

13 강원도지방경찰청 보안과, 1969, 「단계별 심문계획」, 『남북귀환어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22, 앞의 보고서, 208~212쪽에서 재인용.

N은 ‘유도 심문’을 하기 때문에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했다고 한다. 이 때 유도 심문이란 한 배를 탄 여러 사람이 함께 납북 귀환한 상황에서 같은 배를 탄 다른 사람이 증언을 했다며 어부를 압박했던 것을 말한다.

지령을 받은 거. 받아왔지 않냐. 특수지령 대라 그러는 데 없잖아요. 교육받은 거 외에는. 그렇다고 이제 또 유도 심문을 합니다. “야 누구는 흥길동이는 댓는 데 니 임꺽정이 너는 왜 안 받았냐.” 아닙니다 해도 맞고 또 인정해도 “이 새끼 너만 또 왜?” 인정하면 인정한다고 또 때리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는 긍정도 할 수 없고 부정도 할 수 없고 그래요. — N

어로 저지선 월선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처벌하고자 했다. 어부의 자녀 A는 고의성을 적용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도로 자꾸만 캐묻고 캐묻고 하니까 고의로 가면 누구나 고의로 가는 사람은 없어. 없고 다 고기 잡다가 다 넘어간 거지, 고의로 넘어가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한 명도 없어. 다 고기 뭐 이렇게 금 그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바닷가에 금 하나 어 여기까지 가면 안 돼 담쌓아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통로인데 뭐 고기 잡다 보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참 붙잡아 가니까. 뭐 그쪽에서 피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피납 아니거든. 고기 잡다 다 잡혀 낚시대 낚시대니까 그냥 던지다 보면은 그쪽으로 끌려간단 말이야. 낚시가 물이 낮은 데로 가는지 이쪽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쪽 동네 또 고기가 많다 하더라고. 그쪽 북한 쪽으로 이북 그러다 보니깐 지금은 지방 명태가 없어. — A

월선 문제는 피해 규명에서도 쟁점이 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1기

진화위도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 행위 등과 함께 월선 여부도 조사 주제로 삼았다.¹⁴ 1968년 11월부터 검찰이 월선 자체에 미필적 고의로 반공법을 적용, 처벌했기 때문에 실제로 납북 선택이 월선을 했는지 따져보는 것이었다. 그런데 조사에서 월선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과거 검찰의 법 적용을 쉽게 반박할 수 있지만, 월선한 경우라면 당시의 고의성 여부를 다시 묻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월선 여부는 당시 어업의 현실에서 고려할 문제이고, 1968년 11월 이전까지 수산업법 위반만으로 처벌했던 경험을 보아도 그 자체가 주요 쟁점이 되는 것은 '납북' 사안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

무리한 반공법, 국가보안법 적용 과정은 불법 구금 및 고문 등 반인권적 국가 폭력으로 가시화되었다. 합동 심문이 끝나면 어부들은 선적지 관할 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되어 2차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었다. 1968년 11월에 납북되었던 건설호의 피해자들은 몇 개월 동안 귀가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구금된 피해자들은 전기 고문, 물고문과 각종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¹⁵

그렇게 해서 거의 14일 동안 저희가 감금된 상태에서 무자비하게 당했지요.
무자비하게. — N

본인이 직접 구타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동료들의 고통이 가까이 있었다.

1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6, 「태영호 납북사건」,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30~132쪽.

15 강원도경찰국, 1969, 「귀환어부 심문 철저 지시」(1969.5.3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22, 앞의 보고서, 208~212쪽에서 재인용.

저는 여기 들어와서 이제 정신적으로 사실, 그 조사받는데 정신적으로 그거 하지만 구타는 저는 안 받았어요. ... 같은 여관에 자면서도 저가 잠을 못 잤어요. 옆에서 맞는 소리에. 소리 지르고 막 고통받는 소리에 잠을 못 잤는데 왜 그러냐, 사람들이 겁을 내가지고 거기서 보고 듣고 배운 걸 거짓말 치는 거잖아. — M

최근에 아버지의 판결문을 본 C는 검찰의 기술 내용을 보고 분노했다고 한다. 북한에 머물려고 했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던 공소 사실은 고문으로 확보한 진술이거나 검찰의 자의적인 기술이었다.

내가 판결문을 보고 기절할 뻔했어. 말했던 게, 검사들이 말을 하기를, 하,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거기 가서 탈출하려고 기다렸다는 식으로 검사들이 다 그렇게 진술을 했더만, 거기다가. (이북에서 탈출하려고 그랬다고요? — 면답자) 이북으로 탈출하려고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검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만. 나도 다 읽어봤어. 판결문을 읽어봤거든. 아니 처자식이 여기 세 명이, 두 명 놓고 애 가진 임신한 마누라 있는데 거기서 기다릴 수가 있냐? 검사들이 그렇게 다 진술을 그렇게 했더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하나라도 고기 더 잡아서 밥 벌어먹고 살라는 거고, 옛날에 무슨 뭐 기계가 좋아서 여기가 바다가 어딘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때잖아, 옛날에는. 뭐 산만 보고 찾아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다 검사들이 진술을 해가지고 죄를 더 만들어 놓고, 사람을 개도 그렇게 개를 누가 그렇게 때려요. 안 때리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물고문까지 다 하고. — C

이처럼 정부는 납북 어부에게 어로 저지선, 북방 한계선 위반을 근거로 해서 1968년 안보 위기 이후에는 반공법,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다. 귀환 즉시 어부들을 연행, 구금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고문 등 가혹 행위를

별였다.

2) 감시와 연좌제

형사 처벌이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해진 후, 어부들은 석방된 후에도 수사 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교육’을 받았다. 남북귀환어부 평가심사위원회가 ‘위해도’에 따라 남북귀환어부들을 세 개 등급으로 구분했고, 1980년대에 들어서 국가안전기획부도 A급 월 2회, B급 월 1회 소재지 및 동향 파악을, C급은 간접동향 수집을 하고, 귀가 후 연 1회 특별 소집 및 반공 교육을 실시했다. 1980년대 초반에도 대검찰청에서는 남북 귀환 어선의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을 형사 입건해서 처벌할 때, 3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하고, 구형에 맞는 판결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를 하라고 검찰에 지시하고 있었다.¹⁶

남북귀환어부의 가족도 감시와 사찰의 대상이었다. 주소지 소재의 각급 경찰서에서는 귀환 당시 수사 담당 검찰청에 가족 실태 조사를 보고했다. 실태 조사에는 가족 사항, 생활 수준, 생계유지 방법 등이 기재되었고, 선원별로도 등급을 나누고 있었다. 보안사에서는 남북귀환어부 명단을 하급 기관에 보내어 사찰에 참고하도록 했다. 건설호의 어부들의 내사 결과 보고서에는 귀환 후 보고 시점까지의 특이 동향, 장기 출타 사항, 재산 증감 사항, 접촉 인물 등을 기재했다.¹⁷

1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22, 앞의 보고서, 216쪽.

17 강릉경찰서, 1977, 「남북귀환어부 등 가족 실태 조사보고(강정 2061-4839)」(1977.5.18.)의 조사 보고에는 1964년부터 1977년 4월 30일까지 141명분의 남북 현황 및 남북귀환어부 가족 실태 조사부 등이 첨부되어 있다고 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22, 앞의 보고서, 216~217쪽.

‘실태 조사’는 가족들의 입장에서 지극히 일상적이고 사적인 공간도 침해받는 것이었고, 어부 당사자는 신고의 불편과 감시로 인한 불안 때문에 가까운 외출도 꺼리게 되었다. 또 1980년대까지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 사찰은 계속되고 있었다. A와 어머니는 ‘집을 지키는 남자들’을 의식하고 살았다. 그의 아버지는 51세에 납북되었다가 돌아와서 70이 다 돼가는데도 감시를 받았다. A는 자신과 가족을 감시하는 경찰한테 “아니, 나이가 칠십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따라다니냐, 지금도 찾아다니시냐”고, 외출했을 때는 “내가 여기에 온 걸 당신들 어떻게 아냐”고 물었다. 경찰은 웃으며 “다 안다”고 했다. D의 아버지는, 아들이 서울에서 열리는 대통령배 축구 경기 결승전에 나가게 되었지만, 타지로의 외출을 신고해야 하는 게 싫어서 가지 않았다.

가족에게 피해가 미칠 것을 우려한 납북귀환어부는 가급적 납북과 귀환 후 피해를 알리지 않으려고 했다. 특히 결혼 전에 사건이 벌어졌던 경우,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G는 아들이 세 살이 되었을 때 남편의 납북 귀환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또한 이웃과 다툼이 있어서 경찰서를 갔을 때 경찰이 말을 해줘서 알았다. L은 1971년에 납북되었다가 1년여 만에 돌아온 경우이다. 그는 진화위에 사건을 접수한 2022년까지 아내와 자녀들에게 피해를 알리지 않았다.

피해자 중에는 1980년대에 다시 간첩으로 몰려서 연행,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납북 귀환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었다. D는 아버지가 “누구 다른 사람한테도 절대로 아버지 갔다 온 거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 “갔다 오신 분 중에 다른 사람이 또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끌려가는” 경우가 있어서였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피해자모임 대표인 김춘삼도 1983년에 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다. 그는 2013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외에도 1980년

대에 납북귀환어부를 간첩으로 몰아서 다시 복역하게 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고, 그 건에 대해서는 2000년대 후반부터 재심이 있었다.¹⁸

한편, 납북귀환어부의 가족과 친척에게는 2000년대 초반까지 연좌제가 적용되었다. 연좌제는 흔히 전근대 사회에서 벌어진 법적 처분으로 생각되지만, 한국에서는 분단 상황에서 가족이 북한에 갔거나(납북, 월북) 납북귀환어부처럼 반공법, 국가보안법 처벌을 받은 후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현재도 관련한 신원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공무원, 군경 등 취업에 제한을 두기도 하지만,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에게는 8촌에 이르기까지 여러 직종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해외여행 및 이주에 제약을 두었다. H는 아버지의 납북 귀환 사실 때문에 경찰 면접시험에서 탈락했다. H의 사촌도 ROTC에 갈 수 없었다.

연좌제는 어부들에게 불안과 죄책감을 가지게 했고, 자신이 직접 겪은 피해보다도 연좌제 때문에 더 괴로울 때가 있었다. K의 할아버지는 “연좌제 때문에 뭘 할 수 없다는 거를 자식들이 알게 될까 봐 그거를 제일 무서워하시고 걱정”했다고 한다. 당시에 주변에서는 “좀 똑똑”했지만 가족의 “납북 이력 때문에 못 하게 되고 그랬을 때 사람이 좌절하게 되”는 것을 보았고, 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 인해 아예 아들이 좌절할 가능성조차 두지 않으려고 고등학교에 진학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납북귀환어부는 생활을 함께하는 가족에게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 당시에 ‘간첩’ 혐의는 사회적인 공포를 야기하기에 충분했다. 결혼 상태에서 아내에게조차 피해를 숨기기도 했고, 결혼 전에 사건이 있었다면 결혼 후 굳이 말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일 텐데 ‘범법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괴로웠던 경험을 다시

18 변상철, 2021, 앞의 논문.

상기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또 구술 사례에서처럼 ‘자신으로 인해’ 가족에게 또 다른 피해가 생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는데, 피해 가족들은 실제로 일상에서 감시를 당하며 국가의 통제를 실감하며 살았다. 연좌제는 가족들의 군대, 취업 등을 제한했고, 이후 삶까지 그 영향이 계속되는 막심한 해를 끼쳤다.

3) 사회적 낙인과 반복된 간첩 조작

수사 기관의 감시와 형을 마친 피해자의 전과는 이웃에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받게 했다. 국가가 경찰을 동원해 납북귀환어부와 가족을 감시, 사찰하자 이웃에서의 낙인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I는 “대놓고는 못 하지만 ‘저 집이 이북 갔다 왔어. 저 집이 고기 잡으러 이북 갔다가 이북 들어갔다 왔어.’ 그렇게 찍혀서 살았”다고 했다. 시간이 지나서 동네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흩어지며 나아지기도 했지만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도 부정적인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아내에게 평생을 말하지 못했던 L은 의식적으로 마을에 봉사를 많이 해왔고, 신망이 높아졌다. 그의 집에는 여러 관공서로부터 받은 표창장도 많았다.

납북귀환어부의 자녀 B는 군 복무 중 ‘빨갱이’ 자식이라는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은 자신의 인생 자체를 회의하게 만들었다.

조교가 인제 처음에는 뭐 행실이 불량하다면서 막 이렇게 툭툭 쳐요. 뭐 건드는 식으로. 때리는 식으로. 그런 다음에 교관이 와서 저 저 자식은 저 빨갱이 자식이라고. 아아, 이게 막막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군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얘기까지 내가 들어야 하나. 어 군대에서 어차피 뭐 내가 내 인생 아이,

이제 망가진다 생각하고 뭐 사고 좀 쳤어요. — B

납북귀환어부의 또 다른 피해는 1980년대에 다시 이어졌다. 이 시기 마을 안에서 간첩 신고를 독려하자 이웃 사이에도 정보원 역할을 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중에도 1980년대에 다시 간첩 조작의 피해자가 된 사례가 적지 않다. 이때의 간첩 조작에 대한 진화위의 진실 규명도 납북 귀환 당시의 피해보다 먼저 이루어졌다.¹⁹

2차 피해라는 게 뭐냐면 옛날 요 동네에서 반공범이라 해가지고 신고하면 막 돈도 주고 상도 주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배 선주 동생이 간첩이라고 신고를 해가지고 또 잡혀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버지들이 그 여섯 분 중에서 한 네 분이 잡혀갔던 것 같아. 네 분의 아버지들이... 우리 또 부락에서 간첩이다 하고 신고를 해가지고 배도 안 타고 갔다 왔는데 이 사람들 네 명인가 다섯 명인가 붙잡혀 가서 고문당하고 빨갱이라고 해가지고 대전교도소에서 3년 4년씩 살고 나왔구만. — A

K는 할아버지가 납북귀환어부였는데, 할아버지의 지인 중 “정보원 노릇을 하다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강요받아서 견디지 못해 정신 이상 증세가 온 거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납북귀환어부와 가족에게 사회적 낙인은 가시화될 수 없는 피해였다.

19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10, 「납북귀환어부 이병규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김이남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김영일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이성국, 강경하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김성학, 이청일에 대한 반공범위반 조작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윤질규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그로 인한 분노와 좌절은 삶에 희망을 잃게 만들었다. 또 어촌 마을 공동체에서 간첩 신고를 독려하며 불안을 조장하고, 범법을 강요해 왔던 1980년대의 상황에는 재차 피해를 입히는 국가의 폭력이 점철되어 있었다. 그 피해는 어부 당사자에게 해소되지 못한 채 가족에게까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4. 가족의 고통과 회복 과정

1) 고통의 전이와 가정불화

납북 어부의 신체적·심리적 고통은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전이되었다. 자신의 피해를 말하지 않았던 G의 남편은 다툼이 있을 때도 “자꾸 말을 하자”고 했다. G는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뭐가 불만인지 말을 하라”고 하지만, 남편은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녀는 지나서 회고하기를 아마도 남편이 가슴속에서 “애통이 터지는 거”였고,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붙잡혀 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G가 남편의 피해를 알고 난 뒤에는 남편이 “이렇게 살 바에는 이복에 있었으면은 더 낫지 않았을까?”라며 한탄을 했다. 당시 남편의 동생은 납북되었다가 돌아오지 못한 상태였는데, 남편이 납북되었을 때 동생을 만났다고 들었다.

납북귀환어부의 실질적인 고통은 북한에서보다 남한에서 더 컸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물리적인 피해를 겪지는 않았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기간에는 통제된 상태에서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고, 가족과도 연락이 끊긴 상황이 물론 편안할 수 없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북한에서의 억류 생활 중에 고문이나 구타는 없었다.

남한에서 처벌을 받고 돌아온 피해자들은 대체로 술에 의지할 때가 많았다. G의 남편도 술을 자주 마셨고, 부부 싸움이 이어질 때가 많았다. B의 아버지도 “항상 쫓기는 것 같고, 두려워하고, 밖에 나오는 걸 겁나” 했다. 그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항상 어두운 데 있고, 혼자 있는 걸 좋아” 해서 아버지와 함께 밖에서 시간을 보낼 형편이 되지 않았다. 아버지는 복역 후 돌아온 “이후부터 술을 엄청” 먹기도 해서 “하루에 (소주) 서너 병은 기본”이었다. D의 아버지는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술을 마셔서 응급실에도 꽤 갔다. 그녀는 아버지가 “간이나 위가 다 혈을 정도로” 음주를 하는 “거의 알코올 중독”이었다고 추측했다.

J의 아버지는 그녀가 국민학교 3학년 때 납북되었다가 돌아왔고, 5학년인 1968년에 다시 납북 귀환했다. 그의 아버지는 납북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고의로 월북했다는 누명을 쓰고 구타와 고문을 심하게 당한 후 실형을 살았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고문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아버지가 직접 피해 사실을 말한 적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버지는 출소 후 제대로 앉아 있지도 못하고 자주 각혈을 하며 자다가도 헛소리를 할 정도로 몸이 망가져 있었다.²⁰ “밥을 하면 그 위의 미음을 떠가지고” 아버지 입에 넣어도 제대로 먹지를 못했다. J는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아프나”하는 원망의 마음도 있었다고 기억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다툼도 잦았는데 아버지가 “엄마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하며 싸우고, ‘뭘 죽으라 그러’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아버지는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일체 말을 안” 했다. 일을 하지 못하고 가족에게 의지하던 아버지는 “가족이 시련을 당하고 힘들어하니까 너무 너무 힘들어”

20 J, 「진실규명신청서」, 진실화해위원회 접수, 2021.12.7.

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랐다. 그녀는 지금에 와서 아버지의 고통을 떠올리면 오히려 “가족이랑 안 살고, 차라리 교도소에서 그냥 살았다면 더 힘든 고통을 안 당하시지 않았을까, 우리들하고 있으면서 더 많이 힘들어”했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했다.

남편이나 아버지의 피해는 고통은 본인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는 폭력으로 나타났다. D는 아버지가 “고문 후유증으로 대인기피증이 있었다”고 회고하며 아버지가 전과 달리 “난폭해”졌다고 했다. 아버지의 불안과 변화한 성격에 어머니도 크게 영향을 받았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외출했다가 예정한 시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불안해했고, 어머니는 “많이 희생”하는 모습이었다.

자녀들을 향한 폭력도 있었다. B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원망을 풀었다고 했지만, 구술이 진행될 때 복잡한 심경이 드러나며 울음이 터져 나왔다. 아버지가 했던 말이 그에게는 잊히지 않았다. “아버지가 때리면서 내가 거기에 있을 때 맞은 거에 비하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했던, 상처를 떠올렸다. 이렇듯 아버지가 겪은 폭력 경험이 자녀들에게도 재현되며 가족 관계는 어그러졌고, 자녀의 청소년 시절은 방황으로 지나갔다.

남북 귀환 피해자였던 아버지를 회고하는 자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당시에는 아버지의 고통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현재는 여러 피해 사실들을 알게 되며 과거를 돌아보고 아버지를 깊이 공감해 가는 과정을 겪고 있었다. 극심한 폭력을 겪은 피해자에게 남은 상처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폭력으로 재생산되거나 다른 성격의 장기적인 아픔과 원망을 남기게 되었다. 그러나 사건의 진실 규명에 나선 가족들은 남편과 아버지의 지난 삶의 의미, 명예를 회복하고, 스스로의 삶 또한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

2) 명예 회복과 해원(解冤)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바람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한국전쟁의 피해, 국가로부터의 폭력과 인권 침해 등 한국 현대사의 중대한 사건의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명예 회복’에서의 ‘명예’는 사전적 정의와는 크게 다르다.²¹ 피해자가 이름이나 권위를 높이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남북귀환어부에게는 부당하게 지워진 ‘간첩’, ‘범법자’, ‘빨갱이’라는 이름에서 벗어나 피해 이전의 평범했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오랫동안 숨겨지거나 조작된, 피해자 스스로 숨겨왔던 피해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

남북귀환어부의 피해자 일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직접 과거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강원 동해안에서는 이들과 연대해 온 사람들이 있었다. 엄경선은 속초 출신으로 『설악신문』 기사를 하면서 동해안 지역 피해자이자 이웃 어른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왔다.²² 그는 지금도 피해자의 모든 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국가 기관(진화위)은 사회 변화와 피해자의 용기에 조응하며 ‘진실 규명’ 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변상철은 1기 진화위에서 사건 담당 조사관이었는데, 피해자가 사건을 접수하고 이후 재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1기 진화위 활동 이후에도 사건을 계속해서 알려왔고, 최근에도 여러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다.²³

21 사전적 정의는 1)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광. 또는 그런 존엄이나 품위, 2) 어떤 사람의 공로나 권위를 높이 기리어 특별히 수여하는 칭호이다. 『표준국어대사전』.

22 엄경선, 2008, 『동해안 남북어부의 삶과 진실』, 설악신문사와 이후 『설악신문』 연재 기사들.

23 변상철, 「남북귀환어부 이야기」, 『오마이뉴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연재.

납북귀환어부에 관해서 1기, 2기 진화위의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면서 정부 자료로 파악 가능한 간첩 조작의 지시, 1968년 무장 공비 침투 등 안보 위기 상황에서의 변화, 처벌과 이후 지침 등은 대체로 밝혀졌다. 1기 진화위에서는 10건의 신청 사건과 7건의 직권 조사 사건에 진실 규명 결정을 했고, 2009년 기초 사실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 조사 보고서를 발행하지도 못했고 사후 조치도 없이 1기 위원회는 활동을 종료했다.²⁴

2022년 2월에 2기 진화위가 처음으로 납북귀환어부 피해 사건의 직권 조사 결정한 후 강원도 민관합동추진단이 만들어졌고, 조사가 결정된 사건 외에도 많은 피해 사건과 피해자가 있었으므로 2기 진화위에 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주로 했다. 2021년 말에 피해자들의 시민 모임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동해안의 고성·속초·양양·강릉·동해 등 지자체에도 협력을 요청하며 다른 피해자들도 진실 규명에 함께하게 되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진화위나 추진단에 접속하기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납북귀환어부인 C는 도로에 붙어 있던 플래카드에도 처음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자기 가족의 이야기라는 것도 잘 몰랐다고 한다. “아버지가 절대로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된다”고 한 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두렵기도 했다. 그러다가 진화위의 연락을 받았고, “서울에서 왔고, (플래카드) 붙은 거 봐서 얘기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납북귀환어부가 3000명 이상이었고, 가족들이 수천 명에 달하지만, 그에 비하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밝히는 피해자는 매우 소수이다. 이들은 추진단의 이 구술에도 응했고, 그 후 국회에서 열린 포럼이나 다

24 엄경선, 2023,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 진행 경과와 과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民官政 토론회 자료집』.

른 피해자의 재판에도 함께 참여한다. 이러한 활동이 피해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 과거에 부정적이었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 당시 상황을 이해하게 되어 원망보다 측은함과 안타까움, 미안함이 커졌다. C는 아버지가 “좋은 세상 한 번 못 보”았다며 “이북만 안 갔더라도 인생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자신과 형제들의 불우했던 생활도 달랐을지 모른다는 회한이 있었다. J는 아버지가 아프신 줄도 모르고 “외출도 안 하시고 돈도 안 벌”고 어린 오빠가 배를 탔던 때에 “왜 아버지는 저렇게 돈을 안 벌으실까?” 아버지를 너무 너무 많이 원망”했다고 한다. 자신도 “이까(오징어) 다라이를 나르고, 리어카를 밀”어야 했던 사춘기에 죽으려고도 했었다. 그러다가 지금은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얘기를 해줬으면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D는 형제들이 아버지가 난폭했던 것만 기억하고 있자, 최근에 자신이 사건을 알고 나서 형제들에게 공유했다. “이제서야 형제들도 아버지가 왜 그랬나를 이해를 하”게 되었다.

다음 J의 이야기에는 최근 다른 피해자를 만나서 아버지가 겪은 일을 알게 된 후 복잡해진 마음, 아버지와 과거에 대한 회한(悔恨)이 담겨 있다.

(생존 피해자를 만나니) 어머! 세상에 하나같이도 울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때 처음 가가지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고문을 받고 그렇게 그런지도 몰랐어.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거기서 엉엉대고 울었어, 나는 아주. 너무 많이 울은 거야. ... 뽀뽀도 해주고, '사랑한다' 한마디도 그런 걸 못 해주고, 이렇게 한 번 아버지 손도 따뜻하게(못 해주고),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웠어. 나는 너무 나를 고생을 많이 시켜가지고, 원망도 했어. 대놓고는 말을 못했지만. '아버지 너무 미안해요.' 근데 혼자서 이제 아버지랑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J

한편, 피해자의 활동은 ‘피해자’임을 자각하는 계기가 된다. 자녀들은 피해자 모임이나 지원 단체를 접하고, 기록을 통해서 아버지가 겪었던 일이 심각한 피해였음을 깨달았다. 피해 사실도 다른 생존 피해자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E는 “이번(피해자 모임)에 (북한에) 다녀 오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고문도 많이 당하고 진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까지는 사건을 감추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았지만 피해자로서 목소리를 내고, 가해자를 향해 요구도 하는 용기가 생겼다. E도 “여러 사람이 모이고, 위원회에서도 도와준다고 해서 이제는 뭐 떳떳하게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

피해자는 과거 국가의 잘못을 바로잡고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역사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운동을 행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 있으며 해결을 위한 지난한 과정에도 인내를 가지고 활동에 임한다. B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에 독립되고 나서 남북이 헤어졌지마는 그다음에는, 국민을 책임져서 지킬,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라고 강조했다. 국가가 “자기네 성향에 안 맞는다고 반공으로 몰아가고” 가족들까지 “개인의 인격을 본 게 아니고 물건으로” 보았다고 했다. “필요하면 갖다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세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는 피해자의 명예 회복이 사람을 물건으로 보았던 국가가 진정한 사과를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

K도 “가해자가 직접 사과를 하면 그게 아마 피해자들한테는 제일 큰 위안이 될 거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가해자는 추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국가를 대리하며 실제로 구타, 고문을 자행하거나 법적 조치를 했던 검사, 판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무죄 판결 못지않게 가해 주체의 사과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더라도 피해자가 실질적인 배·보상

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또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잘못된 사법 판단은 피해자에게 다시 번거로운 재판 절차를 감당하게 하고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만드는 사회적 악이다. 왜 수십 년 동안 피해를 겪었는데도 피해자가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는 다짐으로 “엎어질 때”가 있어도 “다시 시작”(D)하자는 의지를 다져야 하는지 국가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가 개별적인 배상 청구 절차를 하지 않고, 중앙 정부나 지자체 등 여러 단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려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특별법은 특별한 대우나 보상을 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반복할 수 없는 과거의 사법적 만행에 대처해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사회적으로 공유될 필요가 있겠다.

5. 맺음말

2023년 6월 28일에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그 취지문에서 “납북귀환어부들을 간첩으로 내몰고 탄압한 국가는 피해자와 가족의 명예와 피해 회복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해줘야 할 의무”를 짚고 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 구제를 신속히 하는 위원회 설치, 직권 재심 청구 권고, 사건 전반에 대한 진상 조사, 보상금 지급, 피해자 및 공동체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고자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²⁵

납북귀환어부의 피해는 한국전쟁 후 남북의 대립에 연원을 두고 있

25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특별법(가칭) 추진위원회(준), 2023,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특별법(가칭) 추진위원회 출범 취지문」, 『“어부는 죄가 없다” —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특별법추진위원회 출범식 자료집』(2023.6.28.).

다. 남한은 정전협정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해상 분계선을 어업과 어부에게 적용하고, 북한은 어부들을 체제 선전에 활용하려고 했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인 어부들에게 간첩 혐의를 씌우고 폭력을 자행했다. 귀환 직후의 영장 없는 연행, 불법 구금 및 고문 등 사법 절차에서의 반인권적 행위는 국가 폭력의 전형적인 양상이다. 이러한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 국가는 여전히 사과하지 않고 있다.

어부들의 피해는 가족의 피해이기도 했다. 수십 년 동안의 감시와 사찰, 연좌제는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어버렸다. 연좌제로 인해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잃었고 친척과의 관계도 단절되었다. 배우자나 아버지의 부재와 피해 후유증으로 가족들은 어렵게 생계를 꾸려야 하고 가장과의 갈등과 가정 폭력도 감내해 왔다. 진상 규명 과정 전까지 피해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족은 원망과 불안 속에 살았지만, 지금 회복을 위해 다시 애를 쓰고 있다.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향한 피해자의 운동은 사회의 정의를 바로 잡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국가는 과오를 사과하고, 실질적이고 빠른 배·보상으로 응답해야 한다. 납북귀환어부 사건을 비롯해 한국 현대사의 국가·사회적 폭력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동해안 지역 피해자들이 피해자임을 자각하고, 직접 모임을 결성해 다른 피해자와 연대하며, 국가를 향해 목소리를 내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피해자가 스스로 국가와 다투거나 국가에 호소하는 방식은 ‘당사자’ 운동으로서의 힘이 있지만, 역사적 사건의 피해는 직접적인 당사자에 국한하지 않으며 사회가 역사를 공유하고 공동의 책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피해자’로 포착하지 못했던 여성과 가족의 경험을 발굴하려는 의식적 노력을 강조하며 마치고자 한다. 이들의 피해나 활동은 역사에서

비본질적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여성의 삶 속에서 그 사건의 복잡다단한 성격을 파악할 수 있고, 가족 단위의 일상과 의식은 평범한 삶을 유지하는 기초로서 유의미하다. 역사적 피해 사건의 법적·제도적 회복 또한 사회적·의식적 회복 없이는 또 다른 권력으로서의 의존과 폐해를 낳을 수 있다. 납북귀환어부 사건을 남성 어부의 국가 폭력 피해로만 접근한다면,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사건의 맥락은 단순해지고 그 회복 방안도 국가나 권력을 향하게 될 우려가 있다. 여성과 가족을 주체로 한 관점은 납북귀환어부 사건에서의 피해 주체와 내용을 복합적으로 규명하게 하며, 다차원적인 회복을 볼 수 있게 한다.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의 억압과 다층의 폭력이 여러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사회와 공유되고 과거가 현재와 호흡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접수일(2023.11.15.), 심사 및 수정일(1차 2023.12.15., 2차 2023.12.22.), 게재확정일(2023.12.22.)

참고문헌

〈원문 자료〉

- 강릉경찰서, 1977, 「납북귀환어부 등 가족 실태 조사보고(강정 2061-4839)」(1977.5.18.).
- 강원도경찰국, 1969, 「귀환어부 심문 철저 지시」(1969.5.30.).
- 강원도지방경찰청 보안과, 1969, 「단계별 심문계획」, 『납북귀환어부』.
- 강원민주재단, 2021, 「제3차 민주주의 포럼 — 국가폭력의 상처와 치유,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인권유린, 간첩조작 사건」(2021.6.25.).
- 강원민주재단·강원일보사, 2021, 「감춰진 진실 —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진실규명 포럼」(2021.11.26.).
- 국무조정실 남북전력기획단, 「연도별 해상납북 및 송환통계」, 『피랍관계철 27통 진호』(동진호의 오기, 국가기록원 CA0286791).
-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특별법(가칭) 추진위원회(준), 2023,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특별법(가칭) 추진위원회 출범 취지문」, 『“어부는 죄가 없다” —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특별법추진위원회 출범식 자료집』(2023.6.28.).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6,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 _____, 2010,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 _____, 2017,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 _____, 2022, 『2022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2권』.
- 치안본부, 1987, 「납북귀환 선박 및 어부현황」.

〈단행본〉

- 김보영, 2016, 『전쟁과 휴전 — 휴전회담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한양대학교출판부.
- 김정인 외, 2020, 『간첩시대 — 한국 현대사와 조작간첩』, 책과함께.
- 엄경선, 2008, 『동해안 납북어부의 삶과 진실』, 설악신문사.

〈논문〉

- 변상철, 2019,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실태 보고」,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구제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토론회』.

_____, 2021, 「납북귀환어부의 국가폭력 피해와 현황, 전망」,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진실규명포럼 자료집』(2021.11.26.).

엄경선, 2023,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 진행 경과와 과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민
官政 토론회 자료집』.

<기사>

「강원민주재단, 한국민주주의상 수상」, 『강원도민일보』 2023.11.8.

「납조선강원도에만도 5만 7천여 명의 어민들이 절망, “어장에서는 일본배들이 독판”치고 있
다」, 『평양신문』 1967.10.8.

「동해어로 확장해역」, 『동아일보』 1957.11.17.

「동해상 전함에 ‘전투비상」, 『조선일보』 1967.1.21.

「두 번 이상 납북어부 사형 구형토록」, 『동아일보』 1968.11.24.

「사건경위 해군발표」, 『동아일보』 1967.1.20.

「사설-어로한계선 변경과 해안경비 강화」, 『경향신문』 1968.11.26.

「어로저지선을 전폐」, 『조선일보』 1957.11.16.

「수산관계자 좌담회 어업 어장 한 일 수교 후 — 어떻게 변했나」, 『경향신문』 1966.1.10.

「해군경비함 북괴에 피격침몰」, 『동아일보』 1967.1.19.

「“휴전선 넘어왔기에” 운운」, 『경향신문』 1967.1.21.

변상철, 「납북귀환어부 이야기」, 『오마이뉴스』 2022~2023년 연재.

Abstract

Serious Long-term Damage and Recovery Issues for Fishermen Kidnapped by North Korea

Aram Kim*

■ **Keywords:** kidnapped fishermen, North Korea, *Bbalgaengi*, social ostracism

In the 1960s and 1970s, a number of fishermen were kidnapped by North Korea, and after being detained for some time, returned to South Ko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victed them of espionage, and subjected them to illegal torture. They were subsequently monitored for decades. The fishermen's families also experienced a kind of collective punishment, suffering restrictions upon their employment and their travel. The fishermen were abducted by North Korea following the two Koreas' failure to reach agreement on maritime boundaries under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bu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ssumed that the fisherman had voluntarily gone to North Korea. While the fisherman were detained in North Korea, it was difficult for their families to make a living, not knowing whether they were alive or dead, and their children also had trouble continuing their studies. Upon returning to South Korea, the kidnapped fishermen were arrested and forcibly interrogated, being beaten and tortured. Relying on answers to leading questions and using various methods of torture, the authorities charged them with espionage. Additional state violence was deployed in the subsequent surveillance of the

* Department of Global Convergence Humanities and Department of History, Hallym University.

fishermen and their families, which sometimes included distant relatives. The fisherman naturally felt guilty about the effects on their families, and this was exacerbated when they were branded as *Bbalgaengi* (Reds) and experienced social ostracism. As a consequence, the fishermen and their families suffered from deteriorating health, often taking recourse in excessive drinking. There was also frequent discord between couples, leading to domestic violence. As of 2023, fact-finding activities continue, seeking to reveal the various types of damage done to these fishermen and their families, and to hold the state accountable. New facts are coming to light which are helping the families to better understand and sympathize with their husbands and fathers who, through no fault of their own, were doubly victimized: by North Korea and then by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Now that this tragedy has been properly exposed, it is hoped that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can be implemented to help the fishermen and their families recover.